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31783호)

1.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3.23.공포)됨에 따라
2.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1783호, '21.6.15.)되어 불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1. 6. 15.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783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공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사단법인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장, 사단법인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단법인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장,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재)한국의료기기평가원이사장,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사장

주무관	서아림	사무관	정재용	의료기기정책 과 과장	전결 2021. 6. 15. 이남희
-----	-----	-----	-----	----------------	------------------------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5296 (2021. 6. 1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761 팩스번호 043-719-3750 / woodsseo@korea.kr / 대국민 공개

고귀한 희생, 가슴깊이 새깁니다.